

대전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10673(본소), 2022나10680(반소) 판결
[물품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10673(본소), 2022나10680(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합10425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안 담당변호사 명광재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변론 종결2023. 5. 3.

판결 선고2023. 5. 31.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합104255(본소),
2021가합104262(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32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3. 5.

-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360,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7,0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 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를 요청하면, 원고가 발주 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자재(용기, 수축필름, 단상자)를 구입하여 완성품을 피고가 지정한 납품장소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거래 중 일부는 외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268,221,0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20. 1. 1.경 위 세금계산서 중 2015. 10. 30. 자 268,947,415원, 2015. 11. 30. 자 219,997,415원의 발행을 각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779,276,240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2015. 10. 29.부터 2020. 4. 6.까지 1,02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0. 1. 1.경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 부담하게 된 추징금 15,300,000원을 지원금으로 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화장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다만 각 거래의 정확한 내역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을 제1, 2, 5, 6,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83,660,105원의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화장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금원은 합계 1,036,300,000원(= 1,021,000,000원 + 15,3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화장품대금

47,360,105원(= 1,083,660,105원 - 1,0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화장품대금 총액은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금액은 779,276,24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화장품대금으로 1,03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화장품대금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그 초과지급액 257,023,760원(= 1,036,300,000원 - 779,27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자신이 발주하였음을 인정하는 부분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9. 29.부터 2018. 10. 30.까지 원고에게 발주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발주한 화장품 수량은 합계 1,183,000개이고, 그 금액은 합계 852,885,000원이다.

1	2015. 9. 29.	아이 세럼 리필(미정, D와 동일사양)	3,000	24,900,000	27,390,000
아이 세럼 리필(미정, D 리필과 동일사양)	7,000	19,600,000	21,560,000		
2	2015. 10. 28.	E Face Glow	30,000	915,000,000	100,650,000
3	2016. 2. 12.	Liquid Foundation	10,000	220,000,000	24,200,000
4	2016. 3. 6.	Liquid Foundation	20,000	440,000,000	48,400,000
5	2016. 4. 12.	Liquid Foundation	20,000	440,000,000	48,400,000
6	2016. 5. 9.	Liquid Foundation	20,000	440,000,000	48,400,000
7	2016. 6. 5.	Liquid Foundation	20,000	440,000,000	48,400,000
8	2016. 7. 19.	F Face Glow	10,000	29,500,000	32,450,000
9	2016. 8. 4.	F Face Glow	10,000	29,500,000	32,450,000
10	2017. 1.	Liquid Foundation	10,000	22,000,000	24,200,000

1	2015. 9. 29.	아이 세럼 리필(미정, D와 동일사양)	3,000	24,900,000	27,390,000
	9.	#23			
11	2017. 2. 26.	F Face Glow	10,000	29,500,000	32,450,000
12	2017. 4. 28.	Liquid Foundation	10,000	22,000,000	24,200,000
13	2018. 1. 5.	Liquid Foundation #21(G 파우치)	150,000	45,000,000	49,500,000
Liquid Foundation #23(G 파우치)	150,000	45,000,000	49,500,000		
F Face Glow(G 파우치)	100,000	30,000,000	33,000,000		
14	2018. 4. 10.	Liquid Foundation #21(G 파우치)	200,000	60,000,000	66,000,000
Liquid Foundation #23(G 파우치)	200,000	60,000,000	66,000,000		
F Face Glow(G 파우치)	100,000	30,000,000	33,000,000		
15	2018. 10. 30.	F Face Glow(G 파우치)	100,000	30,000,000	33,000,000
F Face Glow	3,000	8,850,000	9,735,000		
합계	1,183,000		852,885,000		

나) 피고가 제출한 발주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16)에 기재된 발주일자, 품명, 수량을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비교하여 보면,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2 내지 49, 55 내지 61에 해당하는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2 내지 30, 갑 제6호증의 33 내지 36, 갑 제9호증)가 위 발주내역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2 내지 49, 55 내지 61의 화장품을 납품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피고가 발주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위 발주내역 이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화장품대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15. 8. 17.	미정(H 페이스 글로우 동일 사양)	20,000	순번 1	갑8
2	2018. 2.	Liquid Foundation #21(G	180,000	순번 50, 51,	갑7-1

1	2015. 8. 17.	미정(H 페이스 글로우 동일 사양)	20,000	순번 1	갑8
	27.	파우치)		52	
Liquid Foundation #23(G 파우치)	220,000				
F Face Glow(G 파우치)	100,000				
3	2018. 3. 2.	Liquid Foundation #23	3,000	순번 53, 54	갑7-2
F Face Glow	3,000				

2) 판단 가) 위 표 순번 1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일자, 품명, 수량과 거래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2015. 8. 17. 자 발주서는 2015. 9. 22. 자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1)와 부합하고, 이는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1과 일치한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3. 'F Face Glow' 3,000개를, 2015. 10. 28. 'F Face Glow' 17,000개를 수출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15. 8. 17. 자 발주서(갑 제8호증)에는, 피고가 2015. 8. 17. 품명 '미정(H Face Glow 동일사양)', 수량 20,000개를 발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9. 22. 자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1)에는, 원고가 2015. 9. 22. 제품명 'H 페이스 글로우 20', 수량 20,098개를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신고내역의 품명(F 페이스 글로우)과 수량(약 2만 여개)이 거래명세서는 물론 발주서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17. 자 발주에 따라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1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위 표 순번 2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일자, 품명, 수량과 거래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2018. 2. 27. 자 발주서는 2018. 4. 2. 자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31)와 부합하고, 이는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50 내지 52와 일치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19, 갑 제18호증의 43 내지 5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2. 27. 자 발주에 따라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50 내지 52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① 원고가 2018. 4. 2. 피고의 부탁을 받아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의 명의인을 모두 원고로 하여 'I LIQUID FOUNDATION (SPF PA30+++ NO.21 LIGHT BEIGE)' 179,572개, 'I LIQUID FOUNDATION (SPF PA30+++ NO.23 NATURAL' 162,866개, 'J FACE BLOW' 148,311개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였다.

② 2018. 2. 27. 자 발주서(갑 제7호증의 1)에는, 피고가 2018. 2. 27. 'Liquid Foundation #21(G 파우치)' 180,000개, 'Liquid Foundation #23(G 파우치)' 220,000개, 'F Face Glow(G 파우치)' 100,000개를 각 발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8. 4. 2. 자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31)에는, 원고가 2018. 4. 2. '리퀴드 파운데이션 #21 5' 179,572개, '리퀴드 파운데이션 #23 5' 162,866개, 'F 페이스 글로우 5' 148,311개를 각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신고내역의 품명 및 수량(리퀴드 파운데이션 #21 약 18만 개, 리퀴드 파운데이션 #23 약 16만 개, F 페이스 글로우 약 15만 개)이 거래명세서는 물론 발주서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의 2018. 2. 27. 자 발주에 따라 원고의 2018. 4. 2. 자 납품 및 원고의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K와 거래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서(갑 제10호증의 19)에 의하면, K이 2018. 4.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산으로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8. 4. 2. 자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31)의 출고지는 '부산시 남구 L에 있는 M (주) N (1~10번 창고)'이므로, 해당일자의 운송내역 역시 이 부분 거래명세서에 부합한다.

④ 원고가 부자재를 구입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서(갑 제18호증의 43 내지 50)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7.부터 2018. 3. 27.까지 O으로부터 부자재 'P LIQUID FOUNDATION 21호(G)' 181,000개, 'P LIQUID FOUNDATION 23호(G)' 171,000개, Face Glow (G)' 151,000개를 구입하였고, 그 구체적인 구입내역은 2018. 2. 27. 자 발주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 위 표 순번 3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발주서에 기재된 발주일자, 품명, 수량과 거래명세서를 비교하여 보면 2018. 3. 2. 자 발주서는 2018. 5. 2. 자 거래명세서(갑 제6호증의 32)와 부합하고, 이는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53, 54와 일치한다.

2018. 5. 2. 자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2. K에 '리퀴드파운데이션' #23 3,024개, 'F 페이스 글로우' 2,993개의 운송을 맡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상호: Q, 구매자부호: R'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한 마지막 날짜는 2018. 1. 4.이고,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서(갑 제3호증)에도 위 거래명세서에 해당하는 거래가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봐도 위 거래명세서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53, 54와 같은 화장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제품의 단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F페이스글로우의 단가는 3,24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리퀴드파운데이션의 단가는 22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품목의 단가를 각각 3,355원 및 330원으로 하여 화장품대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2,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8.

F페이스글로우의 단가를 3,355원으로 정하여 발주를 요청하였으나, 2016. 7. 19. 그 단가를 3,245원으로 정하여 발주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6. 7. 19. 이전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F페이스글로우의 단가는 3,355원이었으나 그 후 단가가 조정되어 3,245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발주서(을 제2호증의 14, 15)에 의하더라도 리퀴드파운데이션의 단가는 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제품들의 단가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화장품대금은 1,066,629,740원[= 1,083,660,105원 - 7,318,080원(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53) - 9,712,285원(별지 출고 내역표 기재 순번 54)]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화장품대금은 1,036,300,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화장품대금은 30,329,740원(1,066,629,740원 - 1,036,30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29,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화장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9. 1. 1.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화장품대금 채권은 기한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한 화장품대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필요에 따라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납품한 화장품대금의 금액과 다른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066,629,74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화장품만을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동현

판사이진영

판사이선미

별지